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김생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1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3월 10일

발 의 자: 김생환, 김기덕, 김정태,  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 
김혜련, 노승재, 박기열,  
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 
성흠제, 송아량, 이영실,  
이정인, 장상기, 전병주,  
전석기, 최웅식, 홍성룡,  
황규복, 황인구 의원(23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들어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, 학교폭력 등 교육환경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등 교육행정 분야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여 소송 및 법률자문 수요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력을 높이고,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의 직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의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의 자문수당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변호사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와 관련된 법률 사무의 효율적 처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
3.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
4. 자치법규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법률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의뢰한 사항

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제3조의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에 대한 기피를 할 수 없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법률고문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조(직무회피 및 신고의무) 법률고문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 신고 후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.

1.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 수임·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
2.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과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·고문, 사외이사, 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
3. 본인 또는 「민법」에 따른 친족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

제4조(정원) 법률고문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위촉)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(법무법인을 포함한다)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

다.

제6조(징계정보 조회) ① 교육감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

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 징계정보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징계정보 조회 결과 위촉하려는 법률고문이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제7조(해촉) 교육감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
3. 소송당사자와의 담합, 불변기간 미준수 등 교육청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4.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
5.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회의) ① 교육감은 중요한 법률사항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 예산의

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자문수당 등) ① 교육감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국제관계,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
2. 특정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
3.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촉 현황 공개)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

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